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문제 1】 “A커피”라는 영업표지권을 가진 가맹본부 甲은 2025. 2. 7. 가맹사업자 乙과 교섭을 한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조항
제5조(상품 등의 제공)
① 甲은 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품(원재료 포함)을 매월 1일과 15일까지 제공하기로 한다.
② 甲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일 20만 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면책조항)
① 甲은 고의나 중과실로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乙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 아래 물음 1), 물음 2)는 별개의 독립된 문제임

물음 1) 甲이 2025. 1. 3. 계약 체결 상담을 위해 甲의 사무실을 방문한 乙에게 乙이 가맹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X지역의 인접 가맹점들의 2023년도 매출액 자료를 제시하면서 X지역의 가맹사업 매출액이 매우 좋다고 설명을 하였다. 이에 乙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甲은 X지역의 인접 가맹점들의 2023년도 매출액이 매우 높았던 사실만 알고 그 후 X지역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2024년도부터 매출액이 매우 나빠졌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가맹계약 후 2025년도 가맹사업을 진행한 결과 X지역의 매출액이 매우 저조하였고, 향후에도 나아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乙은 사기와 착오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甲은 乙이 매출액을 잘못 안 것에는 확인을 소홀히 한 乙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을 고려할 때, 乙의 가맹계약 취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甲이 가맹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커피의 원재료를 위 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시기보다 10일 늦게 제공하여 그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 乙에게 500만 원의 영업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乙은 甲을 상대로 상품의 제공 지연을 원인으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위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포함)를 하였다. 이에 甲은 위 계약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설사 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 계약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1일 20만 원을 상한으로 한 10일간 200만 원을 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甲이 고의로 乙에게 커피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甲의 주장을 고려할 때, 乙의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甲은 乙 주식회사와 택배지점 운영 관련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1. 甲은 乙로부터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과 통제를 받으면서 乙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한다. 2. 甲은 乙에게 택배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출수입금 전액을 일 단위로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한다. 3.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의해 지점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 거래처의 이탈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乙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수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乙은 위 계약서 3.의 내용과 수탁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甲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각 주장의 타당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